

『구미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,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제명 변경
 - 당초 : 「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」
 - 변경 : 「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(안 별표)
 - 당초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1항 및 제2항
 - 변경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제3항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표기 방식 변경
 -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(안 별지 제2호서식)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신설(안 별지 제4호서식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
인용 조문과 개인정보표기 방식 등을 조례에 반영,
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
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